

의안번호	2202485
의 퇴 인	황희 의원
회 답 일	2024.08.27.
(추계번호	24C18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 (급식 관리)	(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 ¹⁾ 에 따른 급식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제2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급식시설·설비비,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및 영양사·조리사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3조(급식 관리) 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급식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급식시설·설비비

1)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와 영양사·조리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동 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²⁾
- 안 제33조제2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를

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피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설비기준 나. 조리실

-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④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의 수
다.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나. 급식관리

-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2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원장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현장학습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4) 원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5) 원장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 6)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7) 원장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 8)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갖추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3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시설·설비비, 영양사·조리사의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 시행 후 제정될 “교육부령”의 내용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의 구비와 영양사와 조리사의 배치기준이 결정되고,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관련 재정지원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 개정안의 “급식시설과 설비”가 현행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조리실’ 등 외의 사항으로 확대되거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전체 어린이집에 두도록 규정되고 이에 대한 전면적 재정보조가 규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³⁾
 - － 참고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에 배치된 조리원(조리사)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와 국·공립어린이집 장비비(급식용품 등 포함) 등이 지원되고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후 제정될 “교육부령”과 “대통령령”의 내용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3)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조리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은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조리사 면허를 갖춘 조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이 「식품위생법」보다 강화된 조리사 배치에 대하여 규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